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3. 12. 8 선고 2023가단111473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3. 11. 10.

판 결 선 고 2023. 12. 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4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. 7. 14.부터 2023. 4. 4.까지는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는 2022. 7. 13. C에게 40,000,000원을 변제기 2022. 9. 12.로 하여 대여해주었는데, 해당 차용증(이하 '이 사건 차용증'이라 한다)에 피고가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사실, 원고가 C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함에도 C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4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 다음 날인 2022. 7. 14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에서 정한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입회인으로서 서명하였을 뿐 보증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, 앞서 본 증거,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,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서는 것으로 하라는 말에 수긍하는 대답을 하였고, 원고가 피고의 보증을 믿고 돈을 빌려준다는 말에도 알겠다고 대답을 하기도 한 점, 차용증에 입회인의 서명날인은 이례적이고, 해당 서명날인 앞에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, 피고가 C의 차용에 보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윤동연